

# 구립어린이집(10개소)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

## 1. 제안이유

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연번	시설명	소재지	시설현황		위탁체 현황		원장	보육정원	비고
			연면적(m <sup>2</sup> )	층수	위탁체명	위탁기간			
1	독산한신 사임당 어린이집	한내로 62 12동 103호 (독산1동)	89.46	지상1층	개인/ 윤화선	16.3.1. ~ 21.2.28.	윤화선	20	재계약 (국공립전환 어린이집)
2	독산2동 어린이집	시흥대로 98길 45 (독산2동)	411.64	지상 1~2층	개인/ 김화자	16.3.1. ~ 21.2.28.	김금락	75	재계약 (국공립전환 어린이집)
3	또래 어린이집	금하로 793 115동 103호 (벽산A, 시흥2동)	84.99	지상1층	개인/ 김평례	16.3.1. ~ 21.2.28.	김평례	20	재계약 (국공립전환 어린이집)
4	벽산꿈 어린이집	금하로 816 511동 102호 (벽산5단지, 시흥2동)	114.84	지상1층	개인/ 박은화	16.3.1. ~ 21.2.28.	박은화	20	재계약 (국공립전환 어린이집)
5	유나 어린이집	금하로 816 516동 102호 (벽산A, 시흥2동)	84.97	지상1층	개인/ 임미경	16.3.1. ~ 21.2.28.	임미경	20	재계약 (국공립전환 어린이집)

연번	시설명	소재지	시설현황		위탁제 현황		원장	보육정원	비고
			연면적(m <sup>2</sup> )	층수	위탁제명	위탁기간			
6	은하수 어린이집	금하로 793 103동 101호 (벽산A, 시흥2동)	114.84	지상1층	개인/ 김금례	16.3.1. ~ 21.2.28.	김금례	20	재계약 (국공립전환 어린이집)
7	하늘빛 어린이집	금하로 816 510동 103호 (벽산5단지, 시흥2동)	114.84	지상1층	개인/ 장사남	16.3.1. ~ 21.2.28.	장사남	20	재계약 (국공립전환 어린이집)
8	예본 몬테소리 어린이집	독산로 22길 94 (시흥5동)	391.32	지상 1~3층	개인/ 주보영	18.3.1. ~ 21.2.28.	주보영	49	재계약 (국공립전환 어린이집)
9	시흥5동 어린이집	독산로10길 24 (시흥5동)	499.41	지상 1~2층	대한예수교 장로총회 합동측 유지재단	18.3.1. ~ 21.2.28.	김봉아	82	재위탁 (변경위탁)
10	해야해야 어린이집	한내로 69-15 (독산1동)	368.93	지상1층	수도권생태 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	18.4.1. ~ 21.3.31.	정오순	75	재위탁 (변경위탁)

## 나. 주요위탁 내용

### 1) 위탁업무

- ▶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
- ▶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  
(교육·영양·건강·안전·부모에 대한 서비스·지역사회와의 교류)
- ▶ 운영시스템(CCTV등), 어린이집 관련서류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행

2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 8개소, 공개경쟁에 의한 재위탁(변경위탁) 2개소

### 3) 위탁기간

#### [국공립전환어린이집 재계약]

- ▶ 독산한신사임당어린이집 : 2021. 3. 1. ~ 2024. 2. 28.(3년)
- ▶ 독산2동어린이집 : 2021. 3. 1. ~ 2024. 2. 28.(3년)

- ▶ 또래어린이집 : 2021. 3. 1. ~ 2024. 2. 28.(3년)
- ▶ 벽산꿈어린이집 : 2021. 3. 1. ~ 2024. 2. 28.(3년)
- ▶ 유나어린이집 : 2021. 3. 1. ~ 2024. 2. 28.(3년)
- ▶ 은하수어린이집 : 2021. 3. 1. ~ 2024. 2. 28.(3년)
- ▶ 하늘빛어린이집 : 2021. 3. 1. ~ 2024. 2. 28.(3년)
- ▶ 예본몬테소리어린이집 : 2021. 3. 1. ~ 2024. 2. 28.(3년)

※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시 3년 → 5년 변경( '20. 11월중 조례 심의 단, 전환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건물사용계약기간(만료일)과 동일함 [재위탁(변경위탁)])

- ▶ 시흥5동어린이집 : 2021. 3. 1. ~ 2026. 2. 28.(5년)
- ▶ 해야해야어린이집 : 2021. 4. 1. ~ 2026. 3. 31.(5년)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1)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, 제14조, 제17조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##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1)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
- 2) 구립어린이집의 책임성 있는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, 제14조, 제17조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# 관 련 규 정

## 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

**제13조(위탁운영)**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결정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1.3.18, 2014.12.30.>

**제14조(위탁계약)**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 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,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.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개정 2014.12.30.>

④ 재수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,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,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[조항 전부개정 2011.3.18]

**제17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.** 다만,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.<개정 2011.3.18>

②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·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·변경·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<신설 2011.3.18>

## 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**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개정 2016.7.1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<개정 2016.7.18.>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<개정 2016.7.18.> [전문개정 2020.7.17]

**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수탁자 선정방식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[본조신설 2020.7.17]